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추가〉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2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14세 미만인 사람 중 예외적으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격의 제한) ----- ----- ----- -----.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 -----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u>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u> 다. (현행 나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호의2는 사격장에서 사격이 금지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13조제1호는 사격장에서 사격이 금지되는 사람으로 14세 미만의 사람을 정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

궁 관련 경기단체(대한사격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사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14세 미만의 선수와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14세 미만의 선수에 대해서는 사격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동 조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장애인 사격, 석궁 선수는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14세 미만의 선수는 등록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는 238명임.

개정안은 14세 미만의 장애인 사격·석궁 선수가 14세 미만의 비장애인 사격·석궁 선수와 마찬가지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의 차별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참고로, 경찰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소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 사격선수로 활동하려면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매년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 선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의무등급 분류를 통해 사

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격 결격 예외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안전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